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. 7. 15 선고 2019가단231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은

피 고 1. B

2.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총청 담당변호사 김민서

변 론 종 결 2021. 6. 17.

판 결 선 고 2021. 7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138,000,000원, 피고 C은 32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
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지인 D과 그의 남편 E이 원고를 찾아와 피고들이 돈을 잘 관리하여 불러줄 것이니 자신과 피고들을 믿고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, 원고는 이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138,000,000원을, 피고 C에게 32,000,000원을 입금하였는바,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돈을 입금한 후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D과 E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입금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수익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고,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는바, 원고에게 피고 B은 138,000,000원, 피고 C은 32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(대법원 1972. 12. 12.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). 또한 원고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, 투자약정에 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.

나. 이 사건의 경우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. 2. 25.부터 2018. 3. 15.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38,000,000원을, 피고 C에게 2018. 3. 30. 및 2018. 4. 4. 2회에 걸쳐 합계 32,000,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

판사 이정덕